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04 발의연월일: 2022. 3. 29.

발 의 자:민형배·신정훈·이정문

윤미향 · 김철민 · 주철현

김의겸 • 변재일 • 박상혁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에서 모든 개별·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불필요하기에, 국가와 국민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은 법률에 담고 집행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합니다. 현행법이 은행의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 위임한 것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하위규정인 고시에서, 법률이 위임한 경영공시 의무를 규정하는 외에도 은행이 일정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은행의 경영공시의무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아울러 보고의무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감안하면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정기총회 보고의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기존 법률과의 입법적 균형을 도모하고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의4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 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부실여신 현황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현황
- 3.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 4.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 2. 제43조의4를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조의4(정기주주총회 보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u>
	<u>다.</u> 1. 부실여신 현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
	용자에 대한 채권 현황
	3.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4. 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
	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
	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u>항</u>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u>정한다.</u>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

은행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 한 은행
- 2. 제43조의4를 위반하여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은행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